

### 3. 駐車場法施行規則中 改正令

建設部令 第482號. 1991年 4月 26日

주차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# 부 칙

제6조제2항중 “건설부장관”을 “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.

#### 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▶

정부조직법의 개정(1990. 12. 27 법률 제4268호)으로 주차장관리업무중 노상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관리업무를 소관부처가 현행 건설부에서 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주차장법시행규칙을 건설부와 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하고, 현재 건설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기계식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을 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. (건설부 제공)